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박경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박경흠, 김태욱, 안영호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2023. 8. 16. 개정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홍보 규정 신설(안 제2조제3항)

- 정보시스템 등록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

나.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규정(안 제3조)

- 최소연서 수 서명 문구 구체화

다.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(안 제4조)

- 공동대표자용 지정 서식 신설 및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

라.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 내용 구체화(안 제5조)

마.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(안 제6조)

- 청구인 명부 서식 보완(별지 제6호서식)
- 수임자의 임무 및 명부 서명·제출 방법 명시

바.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규정(안 제7조)

- 청구인명부 내용에 조례명 및 이의신청 기간 추가
- 청구인명부 열람 방법 및 장소 구체적 명시

사.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회의규칙 명시(안 제9조)

아.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(안 제10조)

- 보정기간, 통지방법, 필요서류 교부 등 구체적 명시

자.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
- 수리 또는 각하 기간 및 통지 방법
-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
-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가능 규정 신설
- 수리 또는 각하 추가 필요 내용 회의 규칙 근거 마련

차. 대표자 변경,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 신설(안 제12조 및 제13조)

카. 청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타.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5조)

파.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(안 제16조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12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4. 1. 25. ~ 2. 1.(7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(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·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.

제3조(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.

제4조(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,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

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조례명, 청구의 취지 및 이유
3. 서명요청 기간
4.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

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(이하 “선정대표자”라 한

다)를 지정할 수 있고,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) ①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받는자(이하 “수임자”)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.

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,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.

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,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청구조례명, 청구취지 및 이유
3. 연서주민수
4.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
5.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

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울산광역시 중구 및 동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8조(공표 방법) 법 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의회 누리집,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9조(이의신청)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

제10조(보정기간)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.

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
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·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: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(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)를 주어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·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

제12조(대표자 변경)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청구의 철회)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(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)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제14조(청구의 개인정보 보호)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,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
2.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

제15조(주민조례 입안지원 등)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 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·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사무협조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2.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
3.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
4. 제2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·홍보·지원 등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청구조례에도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청구인의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 · 체류지)	
	(전화번호 :)	
	[]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[]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	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 지 청구	
주요내용	○ ○ ○	
청구의 취지 및 이유		

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※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. ※ 이용신청시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, 대표자 증명서(대표자 성명 포함,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)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.	[] 이용신청 [] 이용신청 안함
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	▶ 대표자 전화번호 []공개 []비공개 ▶ 대표자 상세주소 []공개 []비공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,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※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위 대표자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

첨부서류	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(주민등록증 등)	수수료
		없음

작성방법

-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[별지 제2호서식]

공동대표자용 []청구 · []철회 · []선정대표자 지정 서식
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

청구인의 대표자

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 (거소·체류지)	전화번호	서명 또는 인	비고
						선정 대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[]청구, []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

작성방법

- “번호”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- “성명”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.
- “주소”란에는 상세주소(동번호, 호수 또는 층수)까지 작성합니다.
- “서명 또는 인”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			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 (거소·체류지)	(전화번호 :)		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	
청구의 취지 및 이유			
서명요청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제외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		
<p>위 사람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</p>			

[별지 제4호서식]

(청구인명부의 표지)

() 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
청구인명부

청 구 사 유 :

서 명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(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

울산광역시 중구 ○○동(총 ○○권 중 제○권)

연서주민수 : 명

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(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)합니다.

청구인의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대표자의 수임자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“괄호()”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- “청구사유”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
- 청구인명부는 각 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.
-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청구인명부
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
서명을 요청한 사람	[]대표자 (성명) (서명 또는 인) []수임자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.

※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(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)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.

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 (거소·체류지)	서명 또는 인	서명일	비고

작성방법

1. “번호”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2. “성명”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.
3. “주소”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.
4. “서명 또는 인”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.
5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, “비고”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수임자	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	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	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 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

작성방법

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[별지 제7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							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					
대표자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(전화번호 :)					
수임자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(전화번호 :)					
	기 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(전화번호 :)					
	기 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<p>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</p>							

[별지 제8호서식]

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대상	() 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	
신청 취지		
신청 사유		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

작성방법

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,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
[별지 제9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
변경 전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변경 후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(거소·체류지) (전화번호 :)	
변경사유		

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변경 전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변경 후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

작성방법

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관 련 법 령

□ 「주민조례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의회사무국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: 김 도 언
- 연락처: 290-4245